

의뢰자(기관) : 도화석면철거(주)

공 사 명 : 용흥초 외1교 외벽개선 및 기타공사

공사형태 : 석면 해체 철거

공기 중 석면비산 농도측정 결과 보고서

2016. 08. 10

측정자(분석자 포함)

성 명	자격 종목 및 등급	자격 등록번호	비 고
김 소 현	산업위생관리기사	15201040884R	측정자
서 정 훈	관련분야 전공	-	측정자
박 호 민	산업보건전공	-	분석자

세명작업환경측정(주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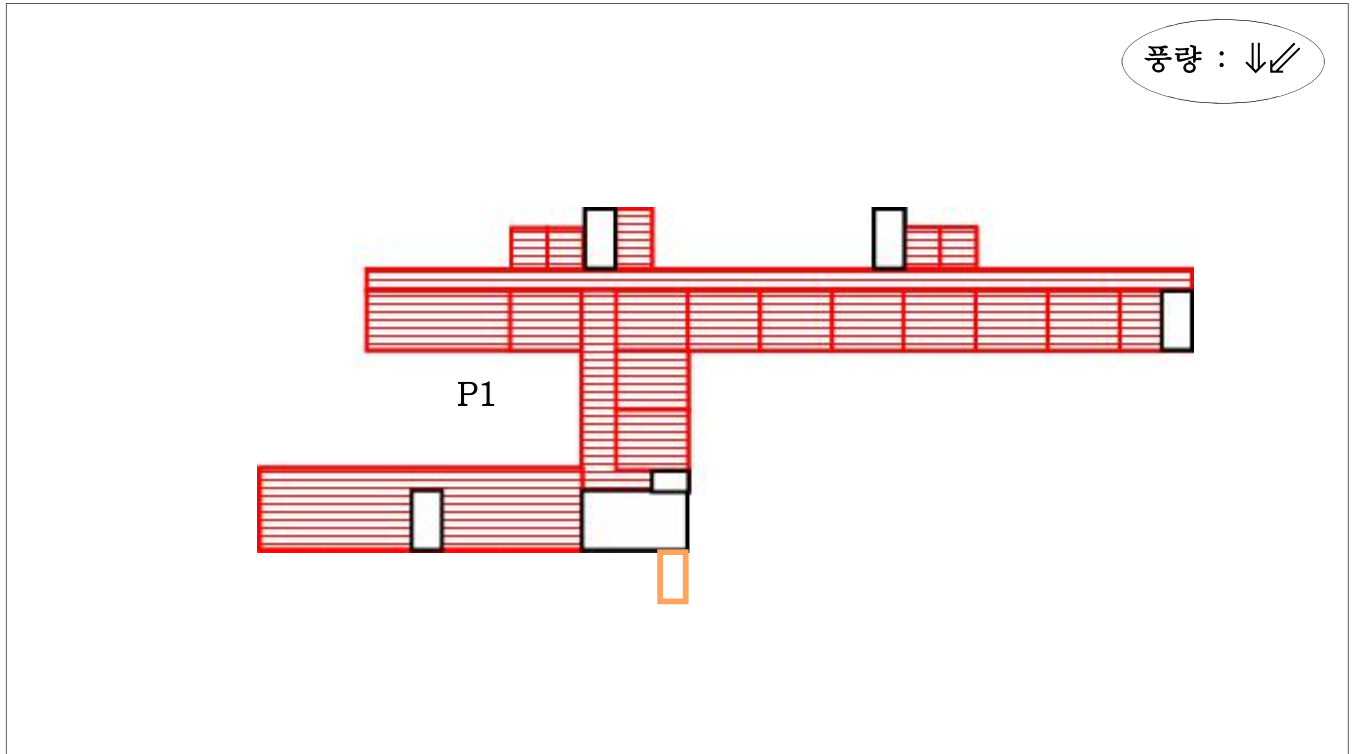
경주시 금성로 369(성건동)

Tel : 054) 741-7747 Fax : 054) 741-7748



< 2016년 08월 10일 >

1. 측정 지점 위치(도식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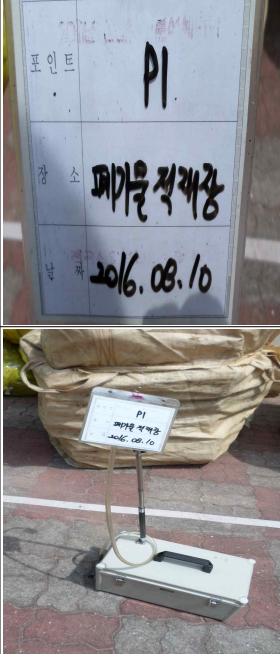


2. 측정결과(개별 석면시료)

측정지점	시료번호	유량(ℓ/min)	시간(분)	측정 결과(f/cc)	검출석면
부지경계선					
부지경계선					
부지경계선					
부지경계선					
위생설비					
작업장주변 실내					
음압기					
폐기물 적재장	P1	14.84	31	0.0002	기준미만

해체 작업이 잠시 중단되어 제외함.
(리모델링공사 천장부착)

3. 측정사진

측정지점	P1
측정사진	

◎ <개별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시료채취 지점>

구분	지점		지점수	시료측정위치	비고
작업 중	부지경계선		4개 이상	부지경계선 높이 1.2-1.5m	-
	위생설비 입구		전수(1개 이상)	위생설비 입구 높이 1.2-1.5m 거리 1m이내	-
	작업장 주변	실내	1개 이상	작업장 주변 높이 1.2-1.5m	-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서 석면 해체·제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작업장 주변을 의미함 - 사용자가 없는 경우 제외
		실외	1개 이상	해당 건축물 외부 높이 1.2-1.5m	- 대상 건축물 주변 5m 이내 (부지경계선이 대상 건축물 5m 이내에 위치 시 제외) - 음압기 설치 시 제외
	음압기		전수(1개 이상)	음압기 공기 배출구 0.3-1m이내	- 음압기는 배출농도를 평가하기 적합하게 설치해야 함
	폐기물 반출구		전수(1개 이상)	폐기물 반출구에서 1m이내, 높이 1.2-1.5m	-

4. 고찰의견

- 「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제38조 및 제40조에 따라 “석면 해체·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”으로 시행함.
- 공기는 14.84 L/min의 유량으로 1개 시료를 채취 하였으며 그 결과 공기 중 석면 농도는 0.0002개/cm³로 기준치 미만으로 측정되었음.
(측정결과표참조)